



교회법상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보호 책임 실무 안내서

소개

브로큰베이 교구에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교회법에 따라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으로 성도들, 특히 취약한 계층의 성도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교회의 선교 의무와 법적 의무를 모두 충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교구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지는 교구의 약속에 자세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브로큰베이 가톨릭 교구는 모든 사람, 특히 어린이와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각 사람의 근본적인 신성함을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도덕적, 법적, 영적 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 대화를 통해 확연히 표명됩니다.

교구 내 어린이와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1.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잘 성장하고 번영하기를 희망하고, 아이들의 안녕을 위협하는 태도와 활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2. 교구 공동체 내에서 항상 정직, 겸손, 성실의 자세로 진실되고 개방적이며,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행동합니다.
3. 명확하고, 접근이 용이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교구 체제를 통해 인권 보장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4. 인식 고취, 교육, 전문성 개발 및 감독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범을 보입니다.
5. 열린 마음과 생각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우려와 위험을 조기에 파악하여 잘 대응하도록 노력합니다.
6. 우리 공동체 내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지원과 인정, 정당한 시정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희망을 구축하도록 돕습니다.
7. 교구 공동체 내 '보호(Safeguarding)'에 대해 명확하고 실천 가능한 기대와 기준, 구조, 절차를 마련하여 개방적이고 정직한 방법으로 소통합니다.
8.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합니다.





본 실무 안내서는 ‘보호(Safeguarding)’에 대한 이해를 제시하고, 본당 지도자가 이해하고 실행해야 하는 후속 보호 기능(행정 및 사목)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절차와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만이 아닙니다. Chancery 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역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함께 책임을 공감해야 합니다.

본 실무 안내서는 보호가 필요한 영역 세가지와 각 영역의 기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가지 보호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브로큰베이 교구가 말하는 안전과 보살핌의 문화
- B. 민사 법규에 대한 책임
- C. 브로큰베이 교구의 모범 사례 책임

A. 브로큰베이 교구가 말하는 안전과 보살핌의 문화

본당 내에 보살핌을 지지하는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돌봄의 문화 속에 사목자는 두 가지 역할을 담당합니다. 첫째, 사목자는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 공동체 속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사목자는 자신도 돌아보아야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목의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항상 신앙 공동체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성스러운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목이란 항상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목을 하기 위해서는 사목의 관행을 구성하는 상호 작용에 있어 시기와 장소, 방법에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경계 감각(sense of boundaries)이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사목을 담당한다는 것은 특권이지만, 그 신성한 특권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목에서 채택한 전략뿐만 아니라 그러한 전략을 소신껏 실행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데이비드 랜슨 박사)

일반 성도 및 방문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이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태도로 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증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목자들은 흔히 평소보다 더 취약하고 예민해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개입되도록 부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¹

¹ Integrity in Our Common Mission, A national code of conduct document of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atholic Clergy, Religious and lay men and women exercising pastoral ministry in Australia, November 2023, page 29.

11/6/2021	4.	상기 동일	등록부 제출 및 감사 날짜 수정	2021년 6월	2021년 6월
13/03/2024	5.	실무 안내서: 교회법상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보호에 대한 책임	‘공동 사명에서의 청렴성’ 에서 목회자를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으로 명칭 교체 부서 이름 수정 인트라넷 참고 문헌 업데이트 문서 제목을 의무에서 책임으로 변경 WWCC 개정 사항 수정 및 강조: WWCC 번호 확인 후 근로 개시 가능. 신고 의무 강조.		

승인 날짜/개정 일정

승인자: Rev Dr David Ranson, 총대리
승인 날짜: 2024년 3월 13일
검토 예정일: 2026년 3월 13일

그래서 목회자들이 자기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할 때 효과적으로 더 향상된 사목을 할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² 때문에 우리는 신체적, 정서적, 영적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면서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보호(Safeguarding)는 안전과 보살핌의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합니다. 사목구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는 교회 생활과 사목, 대인 관계와 예배에 있어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목구 성도를 보호하라는 소명을 받은 교회의 사목구 지도자들에게 정직과 참여, 대화를 장려하는 돌봄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위험하거나 유해 우려가 있는 영역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므로써, 위험에 처한 아동이나 성도들이 항상 두려움없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현할 수 있고, 존중받고 진지하게 경청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사명과 민법을 준수하고 서로 보완할 때 비로소 사목구 구성원과 지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 민사 법률상의 책임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사목자로서 입법 및 행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³. 이러한 의무는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지원하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적 감독과 관련된 행정 기능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2. 우려 행동 신고 제도
3. 심각한 피해 위험 신고 의무제
4. NSW 경찰에 범죄 신고

1.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WWCC)

WWCC는 NSW 주에서 아동 관련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하는 법적 요건입니다.

² Integrity in Our Common Mission, A national code of conduct document of Principles and Standards for Catholic Clergy, Religious and lay men and women exercising pastoral ministry in Australia, November 2023, page 30.

³ Integrity in Our Common Mission states that we abide by the requirements of mandatory reporting and other relevant legislation, ensuring that the proper processes of law are not interfered with or hindered. November 2023, page 11.

WWCC는 5년 동안 아동 관련 업무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적합성을 승인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아동 보호(아동 관련 업무)법 2012 및 아동 보호(아동 관련 업무) 규정 2013(*Child Protection (Working with Children) Act 2012 and Child Protection (Working with Children) Regulation 2013*)

담당기관: NSW 아동 보호국(NSW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OCG)
<https://ocg.nsw.gov.au/working-children-check>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의 법적 의무: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사목구의 고용주로 간주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WWCC 무소지자를 아동 관련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동 업무 적합성 확인이 필요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경우 해당 법에 따라 고용주는 확인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등록:**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에 온라인 양식을 제출하여 단체를 등록하십시오. 고용주는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지정합니다.
- **직분 파악:** 조직 내에서 아동과 관련된 업무나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직분이 WWCC가 필요한지 혹은 면제 대상인지를 파악하십시오.
- **확인:** 다음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WWCC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하십시오.
 - 신규 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의 애플리케이션 (앱) 번호 또는 WWCC 번호
 - WWCC 만료일 이전에 갱신이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아동 관련 활동에 참여시키기 전에 조직의 담당자는 WWCC 번호(필수 대상인 경우)를 온라인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고용주 본인의 번호는 반드시 다른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 **기록 보관:** WWCC가 필요한 직원의 기록을 보관하십시오. 기록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WWCC 번호, 확인 날짜, 검증 결과, 만료일, 근로자가 유급 직원인지 또는 자원봉사자인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세부 사항은 아동 관련 사목구 활동 등록부(*Child Related Parish Activity Register*)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WWCC 확인은 근무 개시 5일 이내에 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 등록의 일환으로 유사시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또는 Safeguarding Office에서 WWCC 상태 변경과 관련해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밀 유지를 요하는 개인 정보를 처리할 권한이 있는 직원 2명을 비상 연락망으로 지정하십시오. 그리고 연락처 정보는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십시오.
- WWCC 만료일 최고 3개월 전에 갱신하도록 직원에게 상기시키십시오. WWCC는 일반적으로 5년간 유효하지만, 유효기간 내에도 상태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WWCC 자격이 금지되었거나 잠정 금지된 사람, WWCC 번호를 찾을 수 없거나, 아동 관련 업무 허가가 만료된 사람은 모두 삭제하십시오. 아동 관련 업무에는 WWCC 허가를 받은 사람만 고용할 수 있습니다.

NCSS와 관련된 기능은 2020년부터 Australian Catholic Safeguarding Ltd (ACSL)라는 단체가 맡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당은 NCSS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실행 계획을 완료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사목구 보호 자체 평가 및 실행 계획의 목적은 주어진 NCSS 지표를 기준으로 사목구 보호 관행 및 문화 현황을 평가하고 사목구가 계획한 보호 접근 방식을 표방하는 사목구 보호 실행 계획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목구 공동체가 함께 보호(Safeguarding) 여정을 지속하면서 안전과 보살핌의 문화를 구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추가 정보

다음 문서는 ACSL 웹사이트 <https://www.acsltd.org.au/services/professional-and-safeguarding-standards/national-catholic-safeguarding-standard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ational Catholic Safeguarding Standards Edition 2, 2022(호주 가톨릭 보호 기준 2022 개정 2 판)

추가 정보 연락처

보호 관행에 대한 지원이나 조언이 필요한 경우 Safeguarding Office (Chancery 및 사목구)에 이메일 safeguarding@bbcatholic.org.au 혹은 전화 02 8379 1605 로 문의하십시오.

개정/수정 이력

날짜	버전	현재 제목	변경 사항 요약	승인 날짜	사용 날짜
29/06/2020	1.	교회법상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보호 의무 실무 안내서	신규	2020년 6월	2020년 6월
7/01/2021	2.	교회법상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보호 의무 실무 안내서	보정: 브로큰베이 채플 사목	2021년 1월	2021년 1월
9/02/2021	3.	교회법상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보호 의무 실무 안내서	보정: NRP 와 VELM 추가, '치유를 향하여' 삭제	2021년 2월	2021년 2월

교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에 있어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숙지하십시오.

어릴 적 교회 직원에게 학대를 당한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그러한 불만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용기있는 행동에 진심어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대응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불만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자신의 우려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므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아동과 관련된 불만 사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조속히 **Safeguarding Office** 에 보고하십시오. **Safeguarding Office** 는 호주 가톨릭 대응 프로토콜 및 **Vois Estis Lux Mundi** 에 의거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불만 처리 정책(Policy Complaints Handling)

다음 문서는 교구 인트라넷의 **Safeguarding Parish Resource Hub**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또는 취약한 성인, 학대/방치 사실에 대한 대응 포스터(Responding to a child, young person or vulnerable adult disclosing abuse or neglect)

- Forma

12. 호주 가톨릭 보호(Safeguarding) 기준 사목구 자체 평가 및 실행 계획

교구 공동체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필요, 이익이 충족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동 성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관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into Institutional Responses to Child Sexual Abuse)는 아동에게 안전한 단체를 만들기 위한 광범위한 연구 및 협의를 바탕으로 10 가지 아동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은 다시 국가 및 주 차원에서 재조정되어 **National Principles for Child Safe Organisations and the NSW Child Safe Standards**(아동이 안전한 단체 조성을 위한 국가 원칙 및 NSW 아동 안전 기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호주 가톨릭 교회측도 이러한 10 가지 아동 안전 기준을 바탕으로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10 개의 호주 가톨릭 보호 기준(National Catholic Safeguarding Standards, NCSS)을 채택했습니다. NCSS 는 문화 및 행동의 변화를 주도하고, 책임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감사를 통해 위험을 줄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이 현재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의 아동 관련 업무 금지(또는 잠정적 금지) 조치 혹은 WWCC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서신이나 이메일을 받을 경우, 목회자는 즉시 해당 근로자를 아동 관련 활동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또는 감독하에 일하는 견습생인지 여부에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Safeguarding Office**에 문의하십시오. 이러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자원봉사자 포함)를 비아동 업무로 전환
- 내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 정지
- 해당 근로자(자원봉사자 포함) 해고

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 대해서 OCG 는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사목구의 경우,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이 고용주에 해당하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구와 같은 단체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 개의 벌금 단위(예, 벌금 1 단위가 110 달러 일 경우, 사목구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 x 110 달러 = 11,000 달러)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침해 통지는 OCG 에서 담당하고 발행합니다.

WWCC 기록은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에 보관됩니다. 등록부는 일년에 두 번 방문 성직자 감사 등록부(Visiting Clergy Audit Register)와 함께 **Safeguarding Office** 에 제출합니다.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 제출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포함): 제출 마감일 10월 1일
-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포함): 제출 마감일 4월 1일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 **Parish Safeguarding Administration** 항목에서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WWCC 금지, 잠정 금지, 변호 확인 불가 실무 안내서(Bar, Interim Bar, Not found WWCC outcome Practice Guide)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정책(Working With Children Check Policy)

2. 우려 행동 신고 제도

우려 행동 신고 제도는 아동 관련 업무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즉,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행동이 신고 대상입니다. 본 제도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업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본당 활동에 참여하는 WWCC 소지자는 누구나 우려 행동 신고 제도에 해당합니다.

주교는 궁극적으로 '관련 기관 책임자(Head of Relevant Entity, HRE)'로서 신고, 대응 및 해당 단체 내 우려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 법률: *Children's Guardian Act 2019(아동 보호자 법 2019)*
담당기관: NSW Office of the Children's Guardian (OCG)
<https://ocg.nsw.gov.au/organisations/reportable-conduct-scheme>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의 법적 의무: 본당 근로자들의 고용주로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근로자에게 우려 행동 신고 제도에 대해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로서 귀하는 WWCC 소지자에 대해 신고 가능한 모든 혐의(reportable allegations) 또는 신고 가능한 유죄 행위(reportable convictions) 사실을 즉시 **Safeguarding Office** 에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이 우려 행동 신고 제도와 관련해 실시한 조사에 사용된 경비는 사목구 경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WWCC 소지자로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 본인도 아동에 대한 본인의 행동에 대해 신고 가능한 혐의(reportable allegation)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 안내 자료(Fact Sheet 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한 대응 정책(Policy Responding to Reportable Conduct)

3. 심각한 피해 위험 신고 의무제

아동(16세 미만)이 심각한 피해(ROSH)에 처해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을 신고 의무자라고 합니다. WWCC 면제자를 포함하여 종교 사목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아동에게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고 의무자로 간주합니다.

관련 법률: *Children and Young Persons (Care and Protection) Act 1998(아동 및 청소년 (양육 및 보호)법 1998)*
담당기관: NSW Department of Communities and Justice (NSW 지역사회 및 법무부, DCJ)
www.dcj.nsw.gov.au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의 법적 의무: 성직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사목구에서 아동에게 종교 활동을 제공하는 사람(근로자 또는 자원봉사자)은 누구나 신고 의무자로 간주되며, 아동(16세 미만)의 안전, 복지 또는 안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Child Protection Helpline** 에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DCJ 에 신고한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반드시 Safeguarding Office 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9. 감사

방문 성직자 및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이하 '등록부')
Safeguarding Office에서 관리하는 등록부에 대한 연 2회 감사는 다음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포함): 감사 마감일 10월 1일
-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포함): 감사 마감일 4월 1일

등록부를 보관하고 모니터링하는 감사 책임은 사목구 사무소에 위임될 수 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정확하게 기록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정보는 본 실무 안내서 제1항에 법적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목구 사무소가 감사를 위해 등록부를 제출하기 전에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제출되는 등록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감사 관리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나열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다음 문서는 교구 인트라넷 *Parish Safeguarding Administration* 항목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목구 방문 성직자 및 감사 실무 안내서(Clergy Visiting Your Parish and Audit Practice Guide)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 및 감사 실무 안내서(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 and Audit Practice Guide)

10. 알려진 범죄자 관리

본당 예배나 활동에 참석하는 성도 가운데 아동 학대 혐의 대상이거나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해당 개인이 본당 활동에 계속 참여할 경우 아동에게 초래하게 될 위험에 대해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위험 관리 과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차후 단계를 도와줄 **Manager for Safeguarding(Chancery 및 사목구)**에게 즉시 연락하십시오.

11. 불만 사항 관리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아동의 안전과 관련해 접수되는 불만(그전 문제 포함) 사항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로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려 사항 신고를 장려하고 환영하며 불만이나 혐의, 또는 불법 행위 신고에 있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하게 대응하고, 위험에 처한 아동을 즉시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Safeguarding 웹페이지

<https://www.bbcatholic.org.au/safeguarding/safeguarding-in-the-chancery-and-parishes/visiting-clergy> 에 있습니다.

- 방문 성직자의 기록은 사목구 사무소, 일반적으로 사목구 관리자/사목구 총무가 관리합니다.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감독하는 것은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의 역할입니다.
-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모든 방문 성직자가 공공 사목 수행에 앞서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 Sacristy Ministry Register 성직자 등록부

- 공공 사목을 위해 본당을 방문하는 모든 성직자는 celebration 전에 성직자 등록부에 서명해야 합니다.
- 등록부 감독은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이 합니다(교회법 35 § 1).
- 사목구 사무소는 본당 방문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전자 등록부를 보관합니다.
- 전자 등록부는 감사 목적으로 일년에 두 번씩 Safeguarding Office 에 제출됩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최종 등록부에 서명하고 감사의 권고 사항 이행을 감독합니다(감사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 항에 나와 있습니다).

8. 브로큰베이 채플 사목

채플에서 **공적으로 사목하는 모든 성직자**는 채플에 위치한 **Sacristy Ministry Register (성직자 등록부, SMR)**에 서명해야 합니다(*Sacristy Ministry Register (Register) Fact Sheet*(성직자 등록부 (등록) 안내 자료) 참조). 공식적으로 목회자 또는 채플로 임명된 성직자는 임명된 본당 주임 신부 또는 부제의 관할권에 속합니다. 또한 방문 성직자는 채플에서 공적으로 사목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성직자 및 수도자 정책(Policy Visiting Clergy and Religious)
-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정책(Working With Children Check Policy)
-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 정책(Policy 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
- 호주 가톨릭 대응 프로토콜(National Response Protocol)
- 우리의 공동 사명 속의 공동의 사명과 청령성(Our Common Mission and Integrity in Our Common Mission)
- 성직자 등록부 안내 자료(Sacristy Ministry Register Fact Sheet)
- 본당 성직자 방문 및 방문 성직자 감사 실무 안내서(Visiting Clergy to your Parish and Visiting Clergy Audit Practice Guide)
- 브로큰베이 채플 사목 안내 자료(Ministering in a Chapel of Broken Bay Fact Sheet)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 교회법 의무: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신고의 의무

외에도 2023 년 *Moto Proprio Vos Estis Lux Mundi(교황 자의 교서)*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교황의 교서에 따라 성직자 또는 수도자가 미성년자 또는 취약한 사람에게 성적 학대를 포함한 제 6 계명에 반하는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근거가 있을 경우 해당 사실을 주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 의무 안내 자료(Fact Sheet 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심각한 피해의 위험 신고 의무 정책(Policy Risk of Significant Harm Mandatory Reporting) 심각한 피해 위험 신고 양식(Form Risk of Significant Harm Report, RoSH Form)

4. NSW 경찰에 범죄 신고

아동 보호에 있어 NSW 경찰의 주요 직분은 아동 학대에 즉각 개입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신고 의무 위반: NSW 주의 모든 성인은 미성년자(18 세 미만)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의심이 가거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5 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보호 의무 위반: 기관에서 일하는 성인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다른 성인이 아동을 학대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줄이거나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 보호 의무의 이행 실패로 범죄 행위로 간주하며 최대 2 년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Crimes Act 1900 (NSW)(NSW 형법)*

담당기관: NSW 경찰

www.police.nsw.gov.au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NSW 경찰 범죄 신고 안내 자료(Fact Sheet Reporting Crimes to NSW Police)
형법에 의거한 범죄 신고 정책(Policy Reporting Offences under the Crimes Act)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English (United States)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English (United States)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English (United States)
- Formatted: Font: (Default) Gulim

C. 브로큰베이 교구의 모범 사례 책임

브로큰베이 교구의 모든 성직자들은 위험에 처한 아동과 성인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본당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아동과 취약한 사람들의 안전과 보살핌에 대한 추가 관행이 포함됩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다음과 같은 보호 관행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5. 연방 경찰 신원 조회
6. 외부 성직자의 방문 허가 및 성직자 등록부(Sacristy Ministry Register) 사용
7. 감사를 목적으로 방문 성직자(Visiting Clergy) 및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s) 제출
8. 알려진 범죄자 관리
9. 아동 관련 직분에 종사하는 사목구 근로자에 대한 보호(Safeguarding) 교육 및 인식 고양
10. 불만 사항 관리

5. 연방 경찰 신원 조회(NPHC)

근로자가 알게 되는 의무와 책임의 특성 때문에 본당은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에게 NPHC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교구 정책에 따라 특정 직위에는 NPHC가 필수입니다. 해당 직위의 필수 요건을 확인하려면 교구 연방 경찰 신원 조회 정책(Diocesan National Police History Check Policy)을 참조하십시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본인의 NPHC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은 행정의 책임을 일반적으로 권한 있는 임원(보통 사목구 관리자/총무)에게 위임합니다.

NPHC 확인은 Verifynow 온라인 포털에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와 Verifynow 포털 간에는 원래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연방 경찰 신원 조회 정책(Policy National Police History Check)

다음은 Parish Safeguarding Administration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사목구 지침 — 연방 경찰 신원 조회(Guidelines for Parish – National Police History Check)

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WWCC)과 연방 경찰 신원 조회(NPHC)의 차이 안내 자료

(Differences between the Working with Children Check (WWCC) and the National Police History Check (NPHC) Fact Sheet)

6. 보호(Safeguarding)에 대한 보수 교육 및 훈련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사전고용심사를 요하는 직분을 담당할 사목구 근로자에게 직분에 따라 보호(safeguarding) 신규 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afeguarding Office 에 연락하여 세이프가드 온라인 입문 과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본당 주임 신부/교구장/원장은 사목구 공동체가 보호(Safeguarding) 교육 및 인식 고양을 위해 제작된 메시지를 접할 수 도록 소통해야 합니다.

교육 참석 기록, 보수 교육 수수료 및 온라인 보수 교육 팩 이메일 발송 기록 등은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의 일부로 사목구 사무소 (일반적으로 사목구 관리자/사목구 총무)에서 취급, 보관, 관리합니다.

Safeguarding Office 는 사목구 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위해 Safeguarding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동 관련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본당 주임 신부는 직분자들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아동 관련 활동 등록부(Child-Related Activity Register)에 기록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가 정보

교구 인트라넷을 통해 아래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호 교육 및 훈련 정책(Policy Safeguarding Education and Training (Chancery and Parish))

아동 관련 활동 사목구 등록부 정책 (및 감사) 정책(Policy Child Related Activity Parish Register (and Audit) Policy)

7. 본당 성직자 방문

D. 사목 허가

- 호주에서 목회하는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는 호주 가톨릭 대응 프로토콜(National Response Protocol)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구에 임명되지 않았지만 공공 사목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방문 성직자나, 교구에 거주하는 수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요건 외에도 성직자와 수도자는 아동 보호(아동 관련 업무)법 2012 (이하 '법') 및 아동 보호(아동 관련 업무) 규정 2013(이하 '규정') 또한 온전히 준수해야 합니다(아동 관련 업무 허가증 정책 및 본 실무 안내서 3쪽 1. WWCC 정보를 참고하세요).
- 사목구를 방문하는 성직자에 대한 허가는 Safeguarding Office에서 관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 제출은